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0.

발 의 자 : 조승래 · 박용갑 · 이광재
김준혁 · 이정문 · 임미애
문진석 · 서삼석 · 김영배
장종태 · 윤후덕 · 김성범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,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.

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·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, 공제대상 한정, 공제금액 차등,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,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.

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 · 중견기업의 공제기간(3년)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

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
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$$A + B + C$$

A: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

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× 300만원

B: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

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× 500만원

C: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

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× 500만원

* A,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	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
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	-----
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	-----
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	-----
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6년	-----
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-----
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	-----
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	-----
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	-----
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	-----
에서 “상시근로자”라 한다)의	-----
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(2024	-----
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	-----
과세연도는 제외한다) 중 1개	-----
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	-----
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	-----
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	-----
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	-----
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	-----
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	-----
공제한다. 다만, 중소기업이 아	-----
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	-----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	-----.

인원 수(이하 이 조에서 “최소 고용증가인원수”라 한다)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,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등상시근로자”라 한다)의 증가 인원 수(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나. (생략)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
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

[illegible][illegible]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
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

한 금액

$$A + B$$

A: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$\times$ 300만
원

B: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$\times$ 500만
원

*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
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
금액은 0으로 본다.

2. 3. (생략)

② ~ ⑨ (생략)

한 금액

$$A + B + C$$

A: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$\times$ 300만
원

B: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$\times$ 500만
원

C: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
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
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$\times$ 500
만원

* A,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
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
금액은 0으로 본다.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